

# 식품분야의 남·북한 공동협력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 남북경협현황을 중심으로 -

장경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 I. 서론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은 북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경제적 모든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변화의 실체는 '경의선 복원' 등 남북한 정부의 공동투자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보완적인 경제 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이며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그간 남북 경협은 기대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고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이나마 화해·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식품산업은 북한내 직접투자 또는 합작투자를 통하여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분

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 시설이 북한 경제회복의 중요한 장애 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직접투자에 많은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나, 식품산업은 중·소 규모의 경공업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은 식품산업분야 남·북한 공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분야 남·북 공동협력사업 지원체계 구축에 있다. 본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 II. 본론

### 1. 북한 경제현황

#### 가.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1999년)

북한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남한의 경제상황과 비교하였다.

	단 위	북 한	남 한	남한/북한(배)
인구	천명	22,082	46,858	2.1
1인당 GNP	만원(달러)	84.9(714)	1,020.6(8,581)	12.0
무역총액	억달러	14.8	2,634.4	178.0
수출	억달러	5.2	1,436.9	276.3

	단 위	북 한	남 한	남한/북한(배)
수입	억달러	9.6	1,197.5	124.7
대미환율	원	2.17	1,189.48	-
외채	억달러	123	1,364.5	11.1
원유도입량	만톤	32	11,816	369.3
발전량(설비량)	억kWh	186(739)	2,393(4,698)	12.9(6.4)
경작지면적	평방Km	21,673	20,619	0.95
쌀생산량	만톤	162.9	526.3	3.2
비료	만톤	77.0	370.1	4.8
철도총연장	Km	5,214	6,583	1.3
도로총연장	Km	23,479	87,534	3.7
자동차	만대	0.73	284.3	389.5
시멘트	만톤	410.0	4,815.7	11.7

자료 : KOTRA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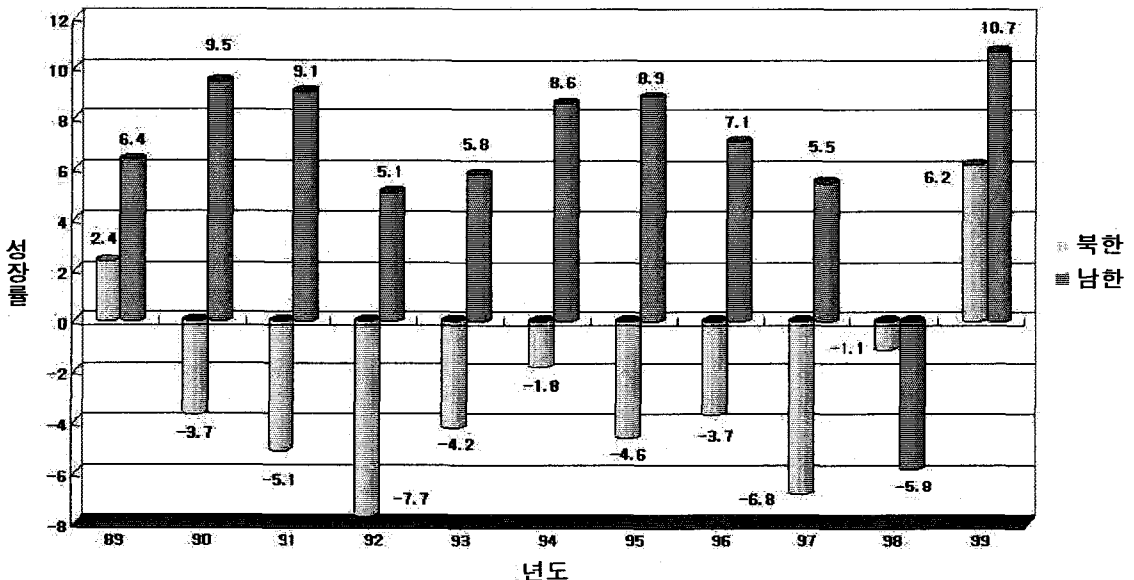
\* 남한인구는 북한인구보다 2.1배 많으나, 경작지 면적은 북한보다 적다.

#### 나. 남·북한 경제 성장률 비교

북한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1999년에 식량생산증가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확대 등에 힘

입어 6.2%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플러스 성장 추세는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완화('00.6.15) 및 남·북경협 활성화 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 성장률 비교]



**다. 북한의 교역현황**

북한의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은 구소련, 중국, 일본 등이다. 과거 최대 교역상대국

이었던 소련과의 교역은 양국간의 경제적 우호관계가 단절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현재는 일본과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표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단위:백만불)

순위	수출국(1998)		수입국(1998)	
	국명	금액	국명	금액
1	일본	219	중국	356
2	중국	57	일본	175
3	홍콩	52	러시아	57
4	인도	37	싱가포르	34
5	독일	30	홍콩	30

자료 : KOTRA 추계

**라.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1998년)**

북한의 주요 수입상품은 곡물이 가장 많

이 수입되었고 광물성 생산품이 다음으로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수입활동이 식량난 및 에너지난 극복위주로 수행되었다.

(단위:백만불)

HS 대분류	주요 수출 상품		주요 수입 상품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산동물	60,996	10.9	-	-
2. 식물제품	57,734	10.3	165,908	18.8
3. 조제식료품	-	-	38,491	4.3
4. 광물성 생산품	42,627	7.6	150,812	17.1
5. 화학공업,플라스틱	28,312	5.1	120,440	13.6
6. 목제품	17,752	3.2	-	-
7. 섬유제품	148,097	26.5	88,073	10.0
8. 귀금속류	20,491	3.7	-	-
9. 비금속류	52,556	9.4	-	-
10. 기계, 전기전자	89,982	16.1	90,865	10.3
11. 차량	-	-	74,772	8.5
12. 기타	40,784	7.2	153,502	17.4
합 계	882,863	100.0	882,863	100.0

자료 : KOTRA 추계

## 2. 대북투자현황

### 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 1)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총 지원액 : 4,087 억원 (95.6 ~ 00.7.31)

- 정부차원 대북지원 : 3,247억원
  - 쌀, 분유, 옥수수, 비료, 현금 등
- 민간차원 대북 지원 : 840억원
  - 지원품목 현황

구분	금액	전 달 물 품				주요기종 단체
합 계	840억원	옥수수	112,599톤	쌀	117톤	1,144 단체
		옥수수가루	11,111톤	감 자	3,200톤	
		수 수	14,576톤	씨감자	5.1톤	
		밀가루	28,725톤	라 면	460만개	
		이유식	112.21톤	비 료	5,300톤	
		분 유	422.82톤	무배추종자	11.2톤	
		식용유	1,072,410 l	양 말	61,000컬레	
		소 금	1,000톤	설 탕	44.02톤	
		담 요	13,000매	비닐하우스	10세트	
		한 우	1,001두	애플란스	3대	
		의약품 (영양제등)	4,114박스	온실용 비닐	50톤	
		초콜렛	14.06톤	유 리	3,000m'	
		젖 소	200두 (사료 46톤)	의 류	85,254점	
		사이다	60톤	수경재배자재	6중	
		감 껍	100톤	결핵검진차	1대	
				기저귀천	1천필	
		비스킷	1,700상자			

주) 전달물품의 종류가 방대하여 식품을 위주로 일부만 발췌하여 표기한 것임.

자료 : 대한적십자사

### 나. 남북경협

#### 1) 남북경협의 정의

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사업은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물자교역

물자교역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남북 교역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한다. 현재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에 의해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직접교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직접교역 비중이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② 위탁가공교역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즉 남한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공급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만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 ③ 협력사업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북한내에서는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의 형태로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단독기업)의 3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합영기업

-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출자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갖고 이윤과 손실을 분배한다.
- 출자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회사로서 투자 현지국의 법으로 등록되어 활동한다.
- 북한측과의 공동경영으로 현지(북한내)에서 노동력 고용 및 행정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북한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러나 북측의 관료주의적 경직성, 시장경제와 국제관행에 대한 지식 결여 등으로 북측과의 공동경영이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합영기업은 제조업이나 SOC, 임가공, 농림수산, 광물자원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현 단계의 남북경협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합작기업

-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며 합작 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임.
- 합작기업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영권이 북측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법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합작기업은 투자 위험이 작고 자본회수 기간이 짧은 소규모 경공업 위주의 설비제공형 임가공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합작사업은 남한기업에 대해서 북한이 선호하는 기업의 형태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질적인 경영이득을 얻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우선 북한측의 경영목표가 이윤추구보다는 고용창출에 치우쳐 있으므로, 북한측이 단독경영을 할 경우 경영수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인원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기업(단독기업) :

- 외국투자가가 100% 전액 출자로 설립되는 조직 형태로, 경영권이 외국 투자자에게 있으며 자유경제구역 지대 내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 외국인기업은 단독투자 및 경영으로 경영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나, 북한의 경제 운용체계나 투자 여건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초기단계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 금강산개발과 관련하여 현대가 남한 단독투자, 단독경영 형태의 합작사업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협력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협력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는 협력사업의 전단계 혹은 협력사업의 보완책으로 위탁가공무역이 추진될 수 있다.

표 협력사업 투자형태 비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 지역	모든 지역	左 同	자유경제무역지대 한정(나진-선봉지대)
경영 조직 및 의사 결정	·공동투자-공동경영 ·이사회에서 결정, 사안에 따라서는 만장일치제 또는 2/3 찬성제	·공동투자-공동분배 ·경영은 북한측, 필요시는 비상설 공동협의기구와 경영 협의 가능	규정 없음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 지역		모든 지역	左 同	자유경제무역지대 한정 (나진-선봉지대)
경영 조직 및 의사 결정		·공동투자-공동경영 ·이사회에서 결정, 사안에 따라서는 만장일치제 또는 2/3 찬성제	·공동투자-공동분배 ·경영은 북한측, 필요시는 비상설 공동협의기구와 경영 협의 가능	규정 없음
분 배	이 익	공동(출자 비율)	공동(계약 조건)	단독(외국 투자가)
	손 실	공동(출자 비율)	단독(경영자)	단독(외국 투자가)
출자 비율		당사자간 합의 결정	출자 지분 개념 없음	외국인 100%
투자 기한		·10년~30년, ·특정 부문 30년이상	계약에 의함	조항 없음
승인 기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 무역지대 당국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
승인 처리 기간		1개월 이내 (나진-선봉지대는 50일 이내)	50일 이내	80일 이내
물자 구입 및 제품판매		국내거래는합영자재상사, 무역기관,여타 합영-합작 회사를 통해 가능	규정없음(외국기자재 수입 시 국가승인필요)	국내거래는 해당무역 기관을 통해야만 가능
고 용 해 고	현지인	노동기관을 통합	규정 없음	노동기관과 계약 적용
	외국인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에 따름		
직업동맹 (노 조)		직업 동맹의 활동 보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보 험		북한보험을 원칙	규정 없음	북한보험기관으로 제한
소 득 세		25%(나진 지대 14%), 이윤발생후 3년 면제, 연장 가능	법이 정한데에 따름(합영기업과 같을 것으로 추측)	14%, 이윤발생후 3년 면제, 2년 연장 가능 (50% 면제)
관 세		수입 관세 면제	규정 없음	수출입 관세 면제
기타 조세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이용세	左 同	左 同
투자 감축		허용 불가	규정 없음	·허용 불가 ·기업등록 후 20일내 등록 자본의 15% 이상 납입, 2년내 전액 불입
분쟁 해결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합의시 제3국 중재 기관도 가능	左 同	북한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
회계, 세무 감독		재정 검열원의 검열	재정 은행 기관	대외 경제 기관과 재정기관

표 투자형태별 장·단점비교

구분	경영 인사	현지행정처리	정치 리스크	모기업 연계	당사자 분쟁
임가공	×	○	○	×	×
합영기업	△	○	×	△	×
합작기업	×	○	△	×	×
외국인기업	○	×	×	○	○

2) 남·북 교역현황

○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10년을 넘었다. '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경제 개방조치를 취한 이래 남북간 교역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89년 18,724천달러이던 총교역규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대북교역이 제도화된 이후 '92년에 173,426천달러를 넘어섰고 '99년도에는 3억3천만달러를 상회하여 역대 최대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 교역 초기 단순반출입 위주의 교역 형태도 점차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이동하

여 '99년도에는 실질교역액의 약 55%를 차지하였다.

○ '99년도 남북교역실적은 333,437천달러로 전년의 221,943천달러에 비해 50.2% 증가하였다. 반출은 211,832달러로 전년 129,679천달러에 비해 71.1% 증가하였으며, 반입은 121,604천달러로 전년 92,264천달러에 비해 31.8%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98년도에 남한의 IMF로 위축되었던 남북교역은 IMF이전의 규모를 회복하였으며, 특히 반출의 높은 증가는 경기회복 외에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북지원물품의 반출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표 연도별 남북교역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267	92	18,249	975	165	194,547
1995	976	105	222,855	1,668	174	64,436	2,644	279	287,291
1996	1,475	122	182,400	1,908	171	69,639	3,383	293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414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2,047	152	74,965	1,863	380	160,924	3,910	489	235,889
합계	13,294	1,043	1,404,485	14,318	1,931	789,017	27,493	2,852	2,193,503

주) 2000 : 2000년도 7월말까지의 교역현황임

자료 : KOTRA, 통일부

표 남북교역 참여업체 현황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교역업체	147	127	145	258	333	442	378	490
위탁가공업체	4	7	9	18	38	48	61	132

주) 통관실적이 있는 업체기준

자료 : KOTRA

3)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 승인현황  
 ○'00년 4월까지 총 39개 사업이 승인  
 되었다.

**표 분야별 경제협력 승인 현황**

총 계	식품	전기전자	의류	건설	기계	의약	화학	기타
39	10	7	6	6	3	1	1	5

(자료 : 통일부)

**표 사업(자)별 경제협력 승인 현황(39개사)**

기 업	사업상재자	사 업 내 용	금액	승인일	비 고
▲대우(합영)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셔츠,가방, 자켓 등 (남포)	-	'92.10.5	의류
고함물산 (합영,합작)	광명성총회사	의류,봉제,직물 등 (남포,나진,선봉,평양)	686만불	'95.5.17	의류
한일합성 (합영,합작)	조선은하 무역총회사	웨타,봉제,방직 (남포,나진,선봉,평양)	980만불	'95.6.26	의류
국제상사 (합영,합작)	조선은하 무역총회사	신발 (남포,나진,선봉,평양)	350만불	'95.6.26	의류
▲녹십자(합작)	광명성총회사	의약품(유로키나제) (평양,통일구역)	300만불	'95.9.15	의약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시멘트 짜이로 건설 (나진,선봉)	300만불	'95.9.15	건설
동룡해운 (단독투자)	해양무역회사	하역설비(크레인등) (나진,선봉)	500만불	'95.9.15	기계
삼성전자(합작)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통신센타 (나진,선봉)	700만불	'96.4.27	전자
▲태창(합영)	릉라888무역 총회사	금강산생물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불	'96.4.27	식품
대우전자(합영)	삼천리총회사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불	'96.4.27	전기 전자
▲한국전력	원자력총국	경수로건설지원사업 (PWC)(신포)	4,500만불	'96.7.19	건설
▲미흥식품 (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채취,가공 (청진,함흥,원산,남포)	15만불	'97.5.22	식품
한 화(합작)	청운산무역회사	PVC장판제조 (평양,남포)	90만불	'97.5.22	화학
LG전자/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전자제품(컬러TV)조립 생산(평양)	450만불	'97.10.14	전기 전자

주) ▲ :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기 업	사업상재자	사 업 내 용	금액	승인일	비 고
▲한국통신	채신부	경수로 건설 통신지원사업(신포)	-	'97.8.1	전기 전자
삼성전자(합영)	조선채신회사	전자교환기등통신설비 생산(나진,선봉)	500만불	'97.8.1	전기 전자
코오롱상사(합작)	은하무역총회사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 생산(평양,남포)	400만불	'97.8.1	의류
신원(합작)	은하무역총회사	의류.봉제사업(평양)	100만불	'97.8.1	의류
파라우수산(합영)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 가공 (원산,원주)	300만불	'97.8.1	식품
금오식품(합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식품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나진, 선봉지대 시범 공 단조성(유현지구)	-	'97.10.14	건설
대상물류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420만불	'97.10.14	건설
삼천리자전거/ LG상사(합영)	광명성총회사	자전거 조립.생산 (나진,선봉)	800만불	'97.10.14	기계
▲태영수산/ LG상사(합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원산)	200만불	'97.10.14	식품
▲한국의환은행	경수로사업 대 상국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금호)	-	'97.11.6	기타
▲(주)아자커뮤 니케이션(합영)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평양,기타지역)	20만불	'97.11.14	기타
(주)에이스침대 (합작)	청류무역회사	침대가구제조.판매 (평양 락랑구역)	425만불	'98.1.9	기타
롯데제과(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평양)	575만불	'98.1.9	식품
(주)광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옥외광고(옥상등 간판, 내부벽면 부착광고)	250만불	'98.2.18	기타
안성개발(합작)	조선56 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식품
▲두레마을영농 조합법인(합작)	라선경제 협조 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 농장 설립(나진,선봉)	800만불	'98.4.8	식품
▲국제옥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신품종 옥수수개발 공 동연구(평양,기타)	110억원 ( '99.3.25)	'98.6.18	기타

기 업	사업상재자	사 업 내 용	금액 (만달러)	승인일	비 고
▲(주)현대상선, 건설 금강개발.(단독)	조선아시아태평양 양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금 강산관광및개발사업	1억33만불 (’99.1.15)	’98.8.6	건설
▲(주)코리아랜드 (합영)	묘향경제연합체	북한부동산개발(임대, 분양)건설팅업(평양)	60만불	’98.8.28	건설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온실농장	표고,느타리,진주등 생산 수출(나진,선봉)	81만불	’98.10.28	식품
▲한국전자산업, 한국통신,온세통신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3만불	’98.11.11	전기 전자
(주)해주(합작)	광명성총회사	북한수산물 생산,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식품
▲(주)평화자동차 (합영)	조선련봉총회사	자동차수리,조립공장 건설 (남포)	3억불	’99.8.31	기계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S/W공동개발	72.7만불	’00.3.13	전기 전자

#### 4) 식품분야 경제협력 현황

39개 남북경협 승인 사업(자)중 식품분야는 총 10개 사업(자)이 승인되었으나, 태창(합영)·릉라888무역총회사에서 운영하는 금강산생물만이 유일하게 경제협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현행 제도상 여러 가지 제한요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등 경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많아 현재까지의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고, 대부분 연락선만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어려움은 다른 분야도 동일하다.

### 3. 북한의 식품산업

#### 가. 북한의 식품산업 관련 기관

- 1) 경공업성, 보건성, 지방공업부
  - 경공업성은 가공식품 생산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신발, 의류 등 경공업제품을 관리함.
  - 보건성은 식품의 위생검열을 담당함.
  - 지방공업부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관리함.
- 2)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수출입검사국

○위치 : 평양시 중구역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 수출입화물에 대한 공적검사기관으로서 검사, 감정업무 수행

○조선수출입검사국 : 수출입화물에 대한 공적검수기관

○지국현황 : 남포, 홍남, 청진, 나진, 해주, 송림, 원산 등 주요항구도시

○소속 : 대외경제위원회

#### 3) 식품관련 연구기관

○식품연구소

○강냉이 가공연구소

○어린이 건강연구소

#### 4) 경공업성 산하의 주요 무역상사

○은하무역총회사

○평양담배수출입회사

#### 나. 북한의 식품 관련 법률

##### 1) 북한법령집 제 10편 (3권)

○식료품가공 및 일용품생산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김일성 교시, 내각결정 81호, 1958.7.10)

※남한의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령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 (내각결정, 1950,4,3)

2) 북한의 국가규격 제 9권

권 별	주 요 내 용	권 별	주 요 내 용
색 인	국가규격 총목록	제5권	기계·설비·공구(5)
제1권	광물, 원유제품, 금속제품	제6권	운송수단 및 용기
제2권	기계·설비·공구(1)	제7권	동력 및 전기설비
제3권	기계·설비·공구(2)	제8권	건설, 요업, 화학, 나무, 방직
제4권	기계·설비·공구(3)	제9권	식료, 기호품, 측정기, 체육용품

주) 국가규격은 남한의 식품기준·규격(식품공전)에 해당됨.

다. 북한의 식품공장 현황

북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약 689개 (1995년)임.



라. 북한의 식품산업의 기술수준

북한은 중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 식품 산업분야는 저조한 투자로 거의 생산기술의 향상이 없었으며, 선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기술도입도 거의 없었다. 또한, 북한을 여행한 방북인사들에 따르면 캔디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의 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대북투자의 필요성

가. 대북투자의 경제성

남북교역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고, 교역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경제협력은 많은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반면, 이들 제약요인은 정치적으로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조치에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44%)라는 설문조사결과(99.12.16 남북경협설명회)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다음이 저렴한 인건비 활용 33.3%, 무관세 적용 9.5%, 북한제품의 시장성 9.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간 대북사업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북한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 대북투자의 경제성을 알아보았다.

### 1) 대북사업의 장점

- 무관세 : 남북한간의 물품 반출입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측은 물론 북한측에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기술수준 :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 기능공들이 생산한 것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손재주를 가지고 있다. 기술지도만 제대로 해주면 남한에서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제품을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다.
- 납기준수 : 동기부여만 제대로 하면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납기를 지키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 언어소통 : 외국에 비해 언어 소통상에 문제가 없어 기술지도 등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다.
- 저렴한 비용 : 저렴한 비용으로 식품류, 섬유류, 완구류, 신발류를 임가공할 수 있다. 대북 임가공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경비가 30%만 되어도 사업성이 있다.

### 2) 대북사업의 문제점

- 무역분쟁 해결능력 부재 및 보험비 적용 :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무역금융을 쓸 수 없고 수출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출대금 회수불능 등 무역분쟁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높은 물류비용 : 남북한간의 물류비는 제3국 운송료에 비해 1.5~2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남포항로의 해상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당 1,000불 가량이며, 부산-나진항로는 850불선이다. 냉동컨테이

너는 인천-남포항이 5,000불, 부산-나진항로는 2,500~3,000불이다.

- 직접통신불가로 인한 신속성 저하 및 통신비 증가 : 현재 남북한간 직접 통신망의 미비로 북한과의 교신은 주로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통신비 증가와 시간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 북한 항로의 특수성으로 인한 많은 인력자원의 투입 : 서류의 이중발급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정부관련 유관부서의 업무협조로 인한 인력투입, 매항차 선박 입출항시 본선 방문 인력 등 상대적으로 북한과 교역관계를 유지하는데 인력자원의 투입이 많다.
-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현황 : 북한은 자력갱생의 자급자족식 경제, 사회주의 건설체제로 인하여 외부와의 무역이 단절되어 왔다. 따라서, 항만·도로·철도·차량·장비·창고 등 무역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물류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계속된 경제난으로 현재 사용중인 설비가 대부분 30~50년 사용한 구소련제이다.
- 우리 선박의 북한 기항시 과도한 검사 및 조사
- 관련서류 상이 : 북한에서 발행하는 B/L 등 선적관련 서류가 선박의 국내 입항시 제출하는 우리의 적하목록 신고 시스템(EDI)과 상이하여, 매번 선박이 도착한 후 선적화물에 대한 재확인, 컨테이너 번호에 대한 세관의 재확인 등으로 하선기일이 늦어져 납기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 북한상품의 대미수출시 고관세 적용 : 미국은 WTO 가입국가와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 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에는 'Column 1'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의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Column 2'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북한이 여기에 해당된다. 'Column 2'의 관세율은 'Column 1'에 비해 평균 3~10배가 높아, 'Column 2'의 관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사실상 가격 경쟁력

이 없다. 또한, 미국은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정상교역관계 대우뿐만 아니라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GSP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다만 미국과 북한간의 쌍무무역협정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미수출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북한 투자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정치상황에 민감한 경험 : 현재까지는 남북교역이 정치상황에 크게 좌우되었다. 남한은 '98.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북한측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개선되리라 전망한다.

### 3) 대북사업의 경제성

현재로는 남북한 경협사업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나타난 항목들이 대북투자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제성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사업은 어떤 분야이든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위에서 열거된 문제점은 과거의 남북한간 특수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 의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없으나, 2001년 10월에 경의선 철도망이 복원되면 연간 2,400만~5,200만달러에 달하는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식품분야의 대북사업 경제성

식품분야는 대북투자기업을 위한 경제성 외에 다른 산업에 비해 북한에 가지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 남북경협에 유리하며, 북한내 사회적 기여가 높은 품목으로 평가된다.

- 적은 자본투자로 현대화 가능 : 식품산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투입으로 현대화가 가능하며, 초기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공정부분별, 단계적 현대화도 가능하다.
-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 식품산업은 노동력 수요가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경제성장 초기단계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다.

- 북한주민 복지에 기여 : 우수한 식품을 공급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 에너지 수요가 적다 : 식품산업은 에너지 수요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 외화가득률의 가능성 높음 : 국제시장(중국, 소련 등)에서 식품의 낮은 단가는 매우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남북경협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가 즉시 수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 북한 내수 가능 품목 : 대북 임가공 사업에서의 장점은 다른 업종과 동일하나, 다른 분야의 경우 북한의 구매능력이 사실상 전무하다 평가되므로 전량 수출을 해야 한다. 반면, 식품의 경우 현재 북한내에서 농민시장의 형태로 암거래 시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식료품이 암거래 최고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식량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북한의 경제회복에 기여에 따라 제일 먼저 소비가 증가할 품목이 가공식품으로 평가된다.
- 시장선점 : 가공식품은 소비자 기호 특성상 시장선점 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다. 특히, 설탕, 분유, 식용유 등은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이며, 인도적차원의 공급시 북한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품목이다.
- 노동집약사업 : 노동집약적이며, 높은 위생관리가 필요한 사업인 김치 제조, 수산물 가공, 잼류가공 등은 매우 유망한 사업이다.
- 중국에 투자된 시설의 북한 이전 : 중국에 원료가공(착즙시설 등), 반가공(기구·용기 등), 완제품(라면) 생산시설이 투자되어 있으나, 중국의 외환정책 및 낮은 노동 기술 수준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공시설을 북한으로 옮겨 임가공 사업을 할 경우 보다 좋은 성과가 전망된다.
- 중국, 러시아 수출 전진기지 : 이미

중국 및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는 라면, 초코파이, 휴잉검 등의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전하여 중국 및 러시아 수출 전진기지로 삼는다.

## 나. 외국의 대북투자 전망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 조치 일부 완화로 남북경협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기업들은 기계설비류가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이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높다. 반면에 북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술력과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외국기업이 설비나 기술 공급을 제한할 경우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 북한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호주는 정부차원의 대북조사단을 8월말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도 외교관계 수립을 올해 안에 성사시켜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관심은 “세계은행총재의 대북지원 용의('00.7.26)”, 미국의 “북한 IMF, 세계은행 가입 원칙 용인('00.7.30)” 등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다. 식품산업의 사회적 기여

북한의 식량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우리 언론에서 발표되는 북한의 식량문제에 관한 통계수치는 통계에 따라 2백만톤 이상의 차이가 있어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판별이 불가능하다. 단지, 북한에 식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가 가져오는 북한주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식품산업이 북한의 식량문제 및 주민보건을 위하여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대북투자의 경제성외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투자 필요성을 조망하였다.

- 1) 식량부족으로 인한 보건문제 발생
  - 북한의 어린이 :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어린이로서, 북한의 어린이는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3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어린이가 발육부진, 저체중 현상을 나타내며, 이들 중 30~50만명의 어린이는 매우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임신부 및 수유부의 영양결핍으로 0~2세의 영유아 영양결핍이 발생되면서, 면역체계 및 뇌 발달 등에 관련된 성장장애 발생하고 있고, 이는 향후 정신장애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WHO의 보고가 있다. 발육부진은 최소 3~5년간의 영양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1996년 북한의 홍수피해 이후 영양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악지대어린이는 요오드, 비타민 C, 비타민 D 등 미량영양소의 부족이 심각하다.
  - 북한 주민의 질병발생 및 치료 상황
    - 말라리아 : 1999년 휴전선 부근에서 발병되기 시작한 말라리아(malaria bibox) 10만명 발병 사실 확인. 동기간 남한 3,000명 발병
    - 결핵 :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병으로 정확한 환자수는 파악되지 않으나, 결핵병원이 9도 3시에 각1개(12개), 요양소 6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500~100명 수준이다. 각 병원마다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다.
    - 치료상황 : 북한은 이미 1970년대에 Polio, Malaria, 결핵을 완전 퇴치시켜 WHO에서 인증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북한의 의료수준은 우수한 것으로 WHO에서 평가하였으며, 백신 등 의약품의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경우 퇴치할 수 있다. 그간 제공되었던 한국의 의약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북한 의료진이 선호하고 있다.
- 2) 영양결핍으로 북한주민 질병 악화
 

북한 어린이의 발육부진, 저체중 현상 및 북한 주민의 결핵 발병 등의 근본 원인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 및 영양결핍

으로 인한 면역체계 저하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완벽한 보전이 있어도 식량부족으로 위기상황은 재현될 것이다(WHO 평양주재관)라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로 북한에서는 “식량이 가장 좋은 약이다”란 말이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보건과 식량의 균형을 이룬 공급이 필요하다.

### 3) 식품산업의 기여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식품산업분야의 대북투자시설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북한주민 및 어린이의 영양개선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을 통한 영양공급 : 북한 어린이 및 영유아의 시급한 영양개선을 위하여, 대북 투자시설을 이용한 영양강화식품(Tailored Food, 분유 등)의 생산으로 북한 식량문제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을 통한 식량문제 기여 : 라면, 제과·제빵, 통조림 등 주식대용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및 양질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공장 건설 : 대북 투자 유망 품목인 김치는 북한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WFP에서 추천하는 Good Food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다.
- 인도적 지원 식품의 대북투자시설에서 생산 : 매년 막대한 양의 가공식품이 북한에 공급되고 있으나, 이들 식품은 영양강화 식품이 아님.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현금, 원료(밀가루 등)로 지원받아, 식품분야 대북투자시설에서 북한의 영양상태에 적합한 영양강화식품을 생산하여, 북한주민의 영양상태에 적합한 강화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대북 투자 환경

### 가. 북한내 환경

#### 1) 투자 관련 법·제도

-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후속법을 꾸준히 제정함으로써 1996년

9월 현재 총 48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이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법적 성격의 ‘외국인투자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하위법에는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투자 관련법을 비롯하여 특별법 성격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있다.

#### 2) 대북투자관련 법령상의 투자분야 구분 세부내용

##### ① 외국인 투자법

- 가능 분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 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
- 장려 분야: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 설비 장비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 생산 부문, 품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문
- 금지 및 제한 분야: 민족경제 발전과 국가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상 낙후되고 환경 보호에 저촉되는 부문

##### ② 합영법

- 가능 분야: 과학기술, 전자, 자동차, 기계 제작, 금속, 채취, 동력, 전채, 제약, 화학, 건설, 금융, 관광, 서비스, 운수 등
- 장려 분야: 첨단기술 등 현대적 기술 도입 부문, 자원 개발, 하부 구조 건설, 과학 기술 개발 부문
- 금지 및 제한 분야: 국가가 정한 부문 및 국가 안전과 사회 이익 저해 대상은 금지되어 있고, 환경 기준 위반, 저급 생산 공정과 설비, 자원의 단순 수출, 경제성 없는 부문 등은 제한되어 있음

##### ③ 합작법

- 가능 분야: 수출 제품 생산, 선진 기술 도입, 관광, 서비스 등
- 장려 분야: 현대적 설비와 첨단기술 투자,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품 생산 부문, 과학기술 연구 대상, 자원 개발, 하부 구조 건설
- 금지 및 제한 분야: 합영법 부문과 동일

##### ④ 외국인기업법

- 가능 분야: 전자, 자동차, 기계 제

작, 동력, 식료가공, 피복가공, 일용품, 건재, 제약, 화학, 건설, 운송, 서비스 등

○ 금지 및 제한 분야: 국가 안전의 지장을 초래하는 부문, 저급 기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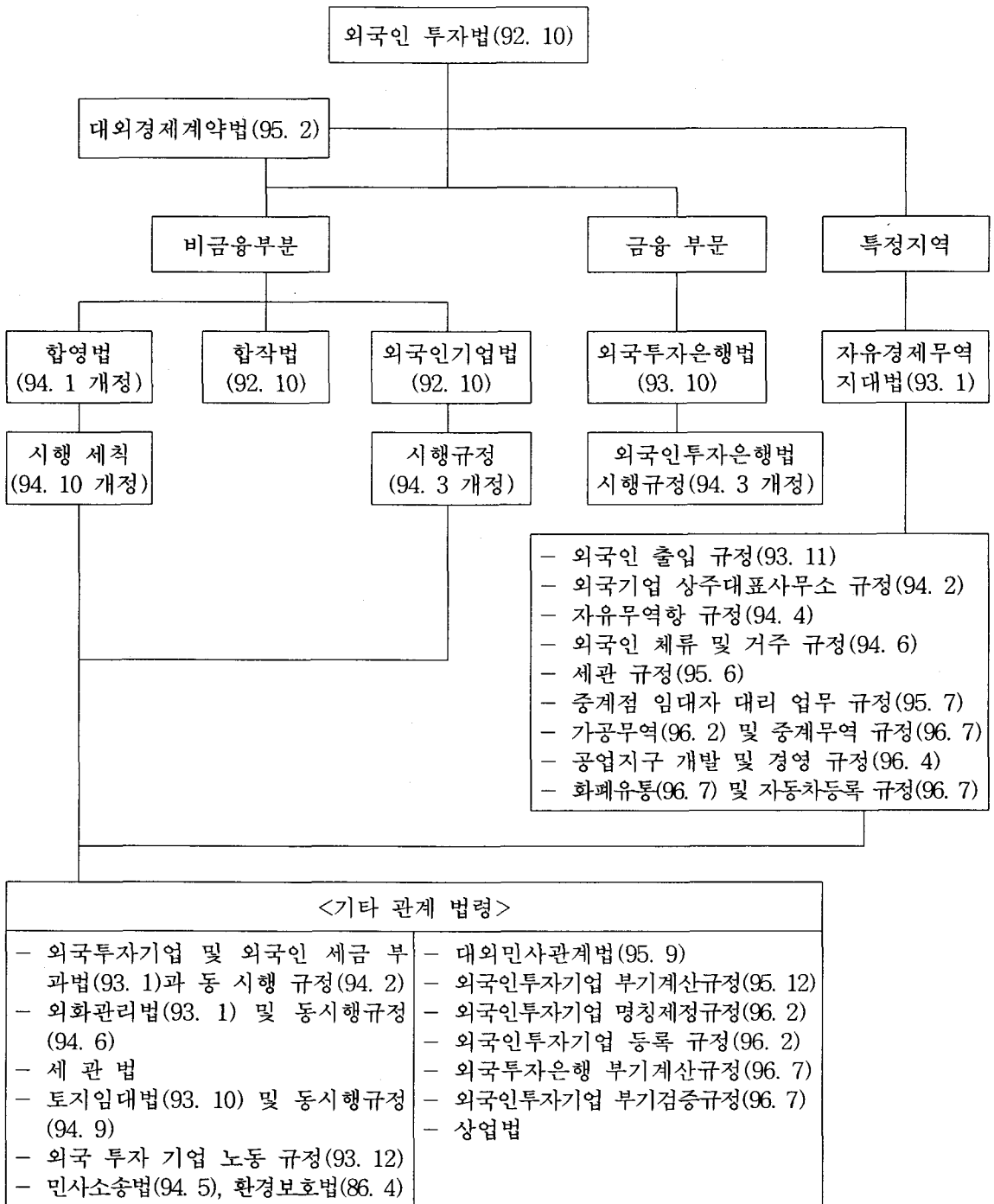


그림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체계도



3) 북한의 대외 접촉 창구

표 중앙기관 산하의 주요 무역상사

기 관	산하 단체	보유 무역 상사명
노동당 (중앙당)	재정경리부	묘향무역회사, 만경무역회사, 인흥무역회사 등
	중공업부	은덕무역총회사 등
	39호실	대성무역총회사, 대성제1무역상사, 대성제10무역상사, 락원무역총회사, 모란무역회사 등
	평양시 당위원회	릉라도무역총회사, 창광무역회사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봉화총회사, 봉화제1무역회사, 봉화제7무역회사, 삼천리총회사, 광명무역연합회사, 광명성총회사, 룡악산무역총상사, 은덕금속수출입회사, 석탄무역회사,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 등
	경공업부	은하무역총회사, 평양담배수출입회사 등
	기계공업부	공작기계무역회사
	금속공업부	흑색금속수출입회사
	선박공업부	선박무역회사
	자원개발부	유성무역회사
	해운부	해양무역회사
	화학부	남흥무역회사
	사회안전부	동흥무역회사
인민무력부	부흥무역회사, 비로봉무역회사, 은파산무역회사, 용성무역회사, 해금강무역회사, 룡악산무역회사 등	

- 4) 자유경제 무역지대와 기타지역의 특성비교
- 북한은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시장 경제 원리 및 정경 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

입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단독투자의 허용, 낮은 임금의 적용, 관세와 세제 혜택 등 특구내 우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표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비자유경제무역지대 특성비교

	비교 항목	자유경제무역지대	비자유경제무역지대
시장경제원리의부분적도입	기업경영활동	•기업관리와 경영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선택권 제한
	상품가격결정	•판매자와 구매자 합의로 결정(대중필수품은 제외)	•국제시장 가격, 국가가격 제정 기관 가격에 준거
	토지임대	•입찰, 경매 방법도 가능	•협상방법만 가능
	외환거래	•외국투자가는 지정장소에서 외화 현금 및 유가증권 거래 허용	•허용불가

	비교 항목	자유경제무역지대	비자유경제무역지대
정경분리 원칙의 부분적 천명	항만출입	• 자유무역항은 선박, 선원의 국적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 출입 제한 가능
	출입국 절차	•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 해당한 절차
	정치적 민감성	• 덜 민감, 당의 지도는 형식적	• 매우 민감, 당의 지도는 강력
우대 조치 부	투자 유형	• 외국인 기업도 단독투자 가능	• 합영, 합작만 가능
	은행 설립	•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도 가능	• 합영은행만 가능
	사무소 설치	• 상주 대표 사무소 설치 가능	• 규정 없음
	보험 사업	• 외국 투자가, 외국기업 가능	• 국가 보험 기관만 가능
	외국인 출입	• 초청장 소지자 무사증 출입 • 5일전 무역지대 당국에 명단 통보 요망	• 사증 소지 필요
	외화 반출입	• 외화 현금, 유가 증권의 자유 반출입 허용	• 반출 제한
	부과세율	• 특혜 세율(기업소득세 14%, 기타 소득 10%)	• 일반 세율(기업소득세 25%, 기타 소득 20%)
	세금 감면	• 기업소득세 : 생산부문과 6,000만 원 이상의 SOC부문, 봉사부문 면제 및 감면 • 재산세 : 건물 5년 면제 • 거래세 : 봉사 부문 50% 감면	• 해당 사항 감면 없음
관세 부과	• 특혜 관세율(관세 면제 또는 감면)	• 보통 관세율(무역협정시 특히 관세율 적용)	

#### 나. 북한과 아시아 경쟁국과의 노동력 및 임금비교

- 북한은 동아시아의 경쟁국에 비해 고용, 해고의 자율권이 적을 뿐 아니라, 연간 휴가 일수가 많아 노무 관리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편이다.
- 임금 수준은 중국과 다소 유사하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높

은 편이며,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언어 소통과 교육 수준에서 양호한 수준이다.

표 북한과 아시아 경쟁국과의 노동력 및 임금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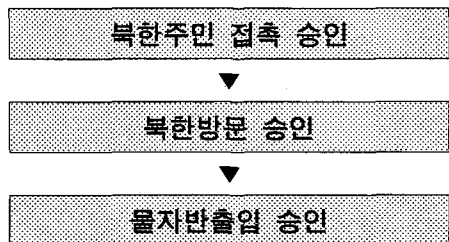
	북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고용해고	노동기관을 통해 고용 및 해고 가능	노동기관이나 외국기업이 직접 고용	노동기관이나 외국기업이 직접 고용	노조와 계약
노동조합	직업동맹과 노동계약 작성, 노동관련 각종 사항 협의	左 同(노조는 工會)	左 同	-
노동력	교육수준 매우 우수 노동력 풍부	교육수준 보통 단순인력 풍부 숙련공 부족	임금대비 비교적 우수 단순인력 풍부 숙련공 부족	교육수준 낮음 단순인력 풍부
휴가	명절 휴가 10일 유급 휴가 14일 대체 휴가 7-21일 출산 휴가 150일 결혼, 장례휴가 1-3일	법적 공휴일 9일 귀향 휴가 연20일 출산 휴가 56일 결혼, 장례휴가 1-3일	左 同	과업금지 연간 2주일휴가
임금 (달러/월)	외국기업 100-150 나선지대 80 미숙련공 150 숙련공 / 관리자 150-400	국영기업의 120-150% (약 65-250달러)	외국기업 35-50 자국기업 20-25 미숙련공 30-50 숙련공 120, 관리자 250	미숙련공 60-80 숙련공 100-160
사회보장 및 보험	사회보험기관이 보조금-연금-정휴양비 지불 사회보험료 7%는 기업 부담 문화후생기금 운영	임금(실수령액) 외에 노동보험기금(퇴직, 양로, 실업 및 의료보험), 주택보조기금(실질 임금의 25%), 물가보조금, 복리비 등은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노사간 각각 급여액의 10% 사회보험기금은 실업, 노동, 재해, 출산, 육아보조로 사용	사회보험료 없음
* 월평균 임금이 태국(140-150달러), 말레이시아 150-160달러, 인도네시아 70-80달러, 필리핀 110-120달러임				

- 주 ① 북한의 임금은 합영회사가 노동기관에 납부하는 실지금액 기준  
 ② 중국의 경우는 합영회사의 기본급 기준으로 회사가 노동기관에 납부하는 실지금액은 기본급에 각종 보조금, 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함.  
 ③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현장인 신포 지역에서의 월 임금은 단순 근로자의 경우는 최저 임금 수준의 110 달러이고, 전문직의 경우는 7개 직군에 따라 150-220 달러로 차별 적용하며, 북한측 공사 관리 책임자의 임금은 300 달러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6. 남북교역을 위한 절차

### 가. 법적절차

남북교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통상 북한주민접촉 승인, 북한방문승인(필요시), 물자반출입승인 등이 있다.



### 1) 북한주민접촉승인

북한주민 접촉승인은 교역업체가 남북교역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교역협의를 위한 의사교환을 북한측과 직접 진행할 예정인지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주민 접촉승인의 의미는 북한주민과의 회합·통신 등이 현재 국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촉 승인을 받으므로써 적법한 접촉이 되도록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이다.

접촉승인은 제3국에서의 북한인 직접접촉,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교환, 통신·우편에 의한 의사교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남한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인이 남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접촉승인은 접촉목적에 기준으로 접촉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목적 범위내에서 접촉만이 유효한 접촉으로 인정되므로 승인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교역목적의 접촉에 대해서 3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승인된 목적 범위 내에서는 접촉횟수, 접촉대상자, 접촉방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접촉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15일이다.

### 2) 북한방문 승인

북한방문은 남북교역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품질관리나 기술지도의 목적상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과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며, 사실상 초청장의 취득이 북한방문에서 가장 어려운 절차이다. 현재 북한측의 초청장은 일정액의 투자에 합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일부 초청장을 외화별비용으로 인식하고 발급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가시적인 투자성과가 예측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업협약 목적의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으며, 설비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된 설비의 설치 및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이거나 기술자에 대해서도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다. 정부는 교역목적의 북한방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지도의 편의도모를 위해 1회의 승인으로 수회 북한방문이 가능한 수시 방북제도를 교역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북한방문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초청장(신변 안전 보장각서 포함) 원본을 비롯한 소정의 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20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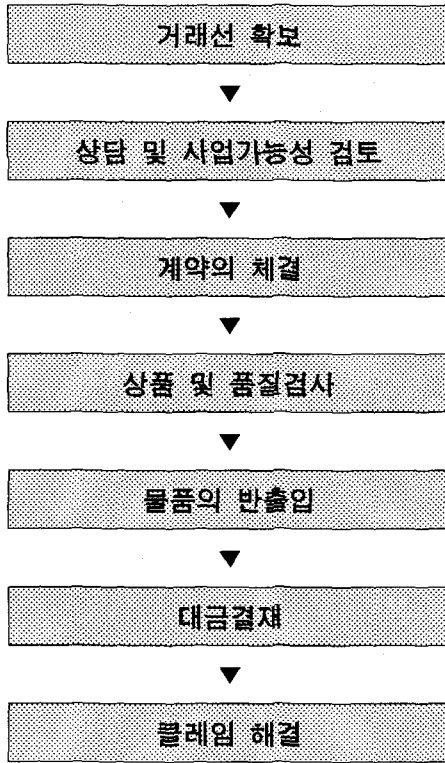
### 3) 물자반출·입승인

북한과의 교역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계약에 도달한 경우 물자의 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자의 대북한 반출·입을 위해 대외무역에서의 I/L이나 E/L에 해당하는 반출·입 승인서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세관통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절차는 일반 수출입 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남북간을 이동하는 모든 물자는 물품의 소유자, 원산지, 종류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역물품을 통일부장관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한 「포괄승인품목」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포괄승인품목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서가 없어도 세관통관이 가능하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반드시 승인서를 구비하여야만 세관통관이 가능하다. 품목의 구분은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 반출 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계약체결전에 반출입(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반출·입 승인은 북한과의 계약서가 구비된 경우 소정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20일이다.

## 나. 실무절차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분류는 HS 상품분류에 의하며,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에 의한다. 남북교역 물품은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해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다. 반입시 승인을 요하

는 품목은 주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이다. 따라서, 식품분야의 남북경협사업(자)는 반드시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거래선의 확보

일반 대외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선을 확보하는 일은 남북교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특히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남북교역에서는 북한측 거래 상대방의 성실성과 신뢰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북한측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으나 결국 장기간에 걸친 경험과 상호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북한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 중개인을 통하는 방법으로 현재 남북교역의 85% 이상, 위탁가공교역의 60% 이상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북한이 중국 북경, 단둥, 연길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남교역창구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우리 기업이 가

장 활발하게 접촉하는 북한창구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북경·단둥 대표부 등이다.

- 남북교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업체를 통하는 방법으로 사업외적 인간관계형성의 필요성 등 부담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사업성사가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 KOTRA 등의 무역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하는 방법으로 최근 북한의 대남교역창구 단일화 추세와 관련하여 이들 기관·단체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 거래선은 사업추진능력이 있는 무역상사가 바람직하며, 정치·사회단체나 당의파 조직, 제3국주재 북한대사관의 무역관계자를 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측은 경제악화로 인해 외화벌이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자칫 성사시킬 능력도 없는 사업을 제안하고 사전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3국 중개인을 통하는 방법은 위험의 분산이나 의사교환의 편리성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 2) 상담 및 사업가능성 검토

북한측과 교역에 대해서 협의하는 경우에는 성사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성사가능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까지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신뢰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여 향후 사업진행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리기업과의 상담·협약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담당자의 실적관리 등을 위해 의향서 등의 문서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리기업은 일종의 초기오퍼로 간주되는 이러한 문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북한측과의 사업협의의 의향서 등의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교역

협의를 검토하여야 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공급능력, 물품가격, 당국의 승인가능성 등이다.

- 북한은 최근 식량난, 인프라부재, 생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경쟁적으로 구매를 제안하는 경우 중국산 등을 위장판매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은 일부 대외수출물품에 대해 매년 수출단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3국 물품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협의하여야 한다.
  - 교역물품중 일부는 국내시장 보호 등을 위해 반입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이유로 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가능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교역과 관련한 상담·협의를 북한측 사업상대방과 직접 이루어지기보다는 북한의 대남창구가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교환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를 줄여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계약체결

북한측과의 매매계약서에는 대외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사항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물품검사 및 품질확인을 위한 방북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여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

계약은 직접 거래상대방과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북한의 대남교역창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후 거래상대방과 재계약하거나 기존계약서를 인정한다는 보증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아야 한다.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이 북한과 체결한 계약서를 확보해 놓아야 하며, 중개인과 북한과의 계약서는 사업의 보증 및 추후 물품의 반출입절차를 위해서도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계약서를 제외한 의향서나 오퍼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

므로 권리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물품확인 및 품질검사

교역물품 확인이나 품질검사를 위한 북한방문은 현재 북한측이 이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역물품의 현지확인 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업체에서는 비교적 북한왕래가 자유로운 제3국인을 방북시키거나, 중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지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따르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는 구매당사자에 의한 물품확인이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업체가 북한측에 현지확인을 위한 방북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 5) 교역물품 반출입

국내선박의 대북운항 지역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인천-남포간 세미-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 서비스

- 북한의 7개 무역항간의 부정기 서비스 (BULK)

- 서해안 : 남포, 송림, 해주

- 동해안 : 원산, 흥남, 청진, 나진·선봉

- 구호물자 수송, 철강류 및 비철금속 수송 등

- 북한-삼국간 부정기 서비스

일본, 중국, 태국, 러시아 등 북한과 제3국간의 직접교역물자 운송(예 : 제철소 원료인 코크스, 아연정광, 빌레트, 옥수수, 쌀 등)

현재 남북한간에는 인천→남포, 부산→나진간에 월 3회 간격으로 선박이 정기운항되고 있으며 주로 수산물·농임산물·광산물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남포→인천간의 운송료는 제3국항로에 비해 1.5~2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교역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남포항로의 해상운임은 20FT 컨테이너당 1,000-1,100불 가량이며, 부산-나진항로는 850불 가량이다. 한편 냉동컨테이너는 인천-남포항이 5,000불, 부산-나진항간 2,500-3,000불 선이다.

교역물품의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원산지증명서, 물품검사증, B/L 등 일반적인 상업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외에 북한의 국경세관에서 발행하는 국경통과증명서, 제3국에서 발행한 보세운송증명서 및 보세구역장치확인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하며 운송선박이 제3국의 둘 이상 항구를 경유한 경우에는 선장의 항해일지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북한물품의 원산지확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교역물품의 제조·생산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한다. 최근 휴대용 가스라이터, 면수건, 농수산물 등 반입 업체가 원산지 위장반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남북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 6) 대금결제

남북한 은행간에는 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은 ;

- ①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 ② 북한 상사의 제3국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
- ③ 등가의 물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①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②,③의 방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7) 클레임 해결

남북교역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북한측과 협의하여 대응물품의 일부로 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교역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이 일부 책임을 분담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중개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중개인의 재정능력 등을 파악해 두고, 중개인과의 계약서에 분쟁조항을 철저히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명확한 클레임 해결방법이

없으므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북한과의 계약 체결시 클레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전 협의하여, 명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7. 남북한 경험 유의사항

남북경협사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이다. 즉, 남한은 자본·기술력을 제공하고 북한은 저렴한 우수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89년 남북교역이 최초로 시작된 이래 10년이상 진행되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과거의 경험과는 달리 불합리했던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하며, 남북경협은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응급처치에 가까운 일방적인 대북지원일 수 밖에 없으며 특수한 도래는 빠르면 5년 후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전기사정의 악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수송망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다. 이런 사정인데도 정확한 딜리버리가 생명인 수출공단건설, 임가공 확대를 당장 실현 가능한 것으로 투자 유치를 선전한다면 또 하나의 남북간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차원 더 높은 남북한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확히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 가. 대북경협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년도 남북교역은 약 3억3천만불이나, 이는 우리 나라 총교역규모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며, 이중 약 1억 3천만 불 상당의 KEDO와 인도주의적 지원 및 현대의 비거래성 거래를 제외하면 순수 상업거래는 2억만불 수준에 불과하다. 490여 개 업체들이 북한과 임가공이나 반출입 거래관계를 갖고 있으나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이다. 대북경협의 성공 케이스라는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사업 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경협은 말이 경협이지 단순한 반출입이 반복되는 물자 거래 수준임을 인식하고 기존 경협의 확대라는 안이한 접근보다는 그야말로 '확 바꾸는' 자세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금융지원, 보험수혜 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 나. 대북 투자자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대북 투자사업을 시작하기 앞에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건전한가?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북한에서 생산할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국내 및 해외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 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북한측과 의향서나 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측 실수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상단계에서부터 확실하지도 않은 프로젝트에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남발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진이 불가능해졌는데도 북측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자기 기업이미지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우리정부가 방해하였다는 불신을 주고 다른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라. 북한을 일시적인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노후설비나 제공하고 값싼 노동력에 눈을 들이는 지금과 같이 우리끼리 사고파는 식의 임가공은 바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 나라의 해외 위탁가공용 원자

재 수출이 연간 30억불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북한산 원산지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이 허용될 경우, 대북 임가공 무역만으로도 최소한 연간 5~6억불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인프라 복원이 대북지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마. 대북 위탁가공 생산 등 프로젝트성 사업에 관심을 갖자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남북한 간 단순 물품 반출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북 위탁가공 생산 등 프로젝트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개방 당시 서방시장에 판매할 만한 품목이 거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한국이나 해외에 판매할 물품이 일부 광산자원과 농수산물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기술과 자본, 설비, 원자재류를 북한에 보내고 이를 북한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이 유망하다.

#### 바. 윈윈전략(Win-Win Strategy) 추진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북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윈윈전략(Win Win Strategy)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력이 그 동안 남북한간 정치·군사적으로 긴장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위축되는 등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한 경험주체들이 상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해간다면 남북경제 모두에 크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 사. 남한시장 진출의 우회 기지로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한으로 반입시 내국간거래로 무관세 특혜가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남한시장을 겨냥하여 북한 진출을 노릴 가능성도 높다. 초기 단계에서



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생산한 제품이 대량으로 국내시장에 반입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 정부와 민간기업간에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원성 투자와 사업성 경험을 구분하되 프로젝트의 주체는 반드시 민간기업들이 맡도록 하고 처음부터 경제성 검토와 사업추진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기업의 전진배치는 시장경제를 북한에 전파하여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분야별로 전문기업끼리 묶어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특히 일정 비율의 중소기업들을 이 컨소시움에 참여시킴으로써 동반진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력과 정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북경협을 새로운 도약대로 활용하여 적어도 전체 중소기업의 20% 정도는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배려가 요청된다. 이제 기업들의 대북 사업도 내부거래차원에서 승인과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체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자유화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경제적인 관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향후 추진 계획**

- ▶ 대북투자 절차 및 남북교역 실무절차 조사

- ▶ 식품분야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체 설명회 개최 (00. 10. 26)
- ▶ 식품분야 대북투자를 위한 국내·외 기업투자동향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 ▶ 연구분야 남북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접촉창구 개발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 ▶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NGO)와의 네트워크 구축

**참고문헌**

- 1)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연구센터, 1997
- 2) 북한 경공업 발전 실행계획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검토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6
- 3) 클릭 북한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 4) 대북경제정보 심층기획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 5) KOTRA 북한경제정보 홈페이지 (www.kotra.or.kr), 2000
- 6)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 (www.hri.co.kr), 2000
- 7) 평양회담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한호석, 2000
- 8) 북(조선) 식량 문제 분석에 대한 재검토, 한호석, 1999
- 9)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999
- 10) 최국 북한의 정치·경제 동향, 국가신용조사팀, 2000
- 11) 대북투자를 위한 실무가이드, 현대경제연구원, 1997